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2년도 투명성 보고서

2022. 4.

엔에이치엔벅스 주식회사 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제 64조의5(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)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22년 4월 12일

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1년도 투명성보고서

1. 일반현황 ('21년 기준)

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	엔에이치엔벅스 주식회사
대 표 자	왕문주
정보통신 주요서비스 /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	영상 청취 이용자수 / 약 3,000명 음원 청취 이용자수 / 약 11만명
정보통신서비스부문 연평균 매출액	약 650억원
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	서비스사업운영실 서상훈 실장

2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

- 1)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: 2022. 4월
- 청소년보호내부관리계획 내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 <청소년보호 내부관리 체크리스트>

		22년도 청소년보호책임자 운영실태 자율정검 체크리스트							
점검내용	Î	점검결과	개선제확('아니오' 해당 시)						
. 청소년보호적임자 지정여부 등	- 31		(di						
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였는가?	- C		0						
는 (저나를 사다)를 되었다. 도를 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이번화의 하시네나 문화이지를 되저하지 않니까 되는 수입하면 이렇게 되었다고 보기된	CI CI	아니므							
[-1]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	- #						
1-1-1. ※(정보통신망법 시험령 제27조)	CFI	아니으							
청소년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의 정보 를 웹사이트에 공개하였는가?		0000000)						
	(4)	아니오							
	-	-111-							
1-2-1. 웹사이트에 공개된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정보가 현행화 되어있는가?	며 다	아니오							
· 3 청소년보호적임자가 입원이 마닌 부서의 장일 경우,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업무를 설명하시오	일원으로 지정되어	012							
※ (성보통신방법 제42조의3제2항)									
제출자료: 항목1의 문항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									
세열사로 (여시) 제출자로1-2_원사이로 공개화된 전처	청소년보호정책 캡	저 제출							
정소년보호제를 수립여부									
- 오프리프트게의 구입이다. - 사업자 성격에 맞는 연도별 자제 청소년보호계획을 수립하였는가?	Pall .	아니므							
	CE		<u> </u>						
2-1-1. 청소년보호의 목표 및 기본원칙, 기술적 관리적 장치,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방법 및 대용절차 등 주요내용이 포함되었는가?	M	아니모							
-2. 열도별 자제 청소년보호계획에 대한 청소년보호책임자의 결재를 받았는가?	08	아니요	방통위 및 여가부 등 관련가관 궁문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관팀과 지속						
THE SHOP CONTRACTOR AND AND AND SHOP CONTRACTOR AND SHOP SHOP CONTRACTOR AND	170	100717-2011	의(결재절자는 아니지만 개선 시 업무공유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.)						
·3. 연도별 자제 청소년부호계획 혹은 청소년 보호정책을 입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공지하였는가?	(A)	아니오							
장목2의 문항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									
제출자료2 (여시) 제출자료라 1.면도별 자제 청소년보호계획 제출	청소년업무가이드	여가부 가이드라인 제출							
제품자료2-2_면도별 자체 청소년보호계획 관련 결재문서	별도 결제진행하지	8:0							
제출자료2-3 연도웹 자체 청소년보호계획 혹은 청소년보호정책 고지화면 캡처	청소년보호정책 노	유하여 지증							
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 조치 실적	0-0-0								
/ SECISION IN NO. 1 등 시 :	Lea	아니므	- i						
-1.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 별도의 표시를 하고 있는가?	0								
-2. 청소년이 청소년위해정보에 접근 시 성인인증을 요구하고 있는가?	50	아니오							
-3. ▼청소년유해정보가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검색 시 금칙어(혹은 청소년유해어)를 설정하고 있는가?	예	아니므							
[-4.] 청소년유해정보(이미지, 용영상) 등에 대해 기술적 조치(필터링)를 실시하고 있는가?	(A)	아니오	접근자제 불가						
-5. □그 외 별도의 성인 커뮤니티 개설 관리, 성인정보 공개범위 스크랩 제한 기능 설정 등 청소년 절근제한 및 관리조치 실적이 있다면 기재하									
청소년유해정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인원을 기재하시오.	2명이 업무 외 시간	에 교대근무로 유해 컨텐츠 통							
3-6-1. 청소년유해정보 모니터링 실적을 기재하시오.									
항목3의 문항물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									
(메시) 제출자료3-1_청소년유해대제물 교시 런처 화면	19골곡/영상 연령되	뜨기화면 제출							
찌줄자르3-2,성인민증 럽저 화면	성인인증장 제출								
제출자료3 제출자료3.3 정소년 원근재한어 리스트(일부만 제출)	급칙어 리스트 접차	日本							
제출자료3-4 이미지, 문영상 등 필터링 적은 접저 화면	유직비디오 19급 표								
제출자료3.5 기타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조지 실적 캡처화면 등.		인인증항 노출되는 화면 제출							
제출자료3-6 모니터링 인력현황 및 실적(개인정보 제외)	정도면속에정로 보	니터링 메일화면 제출							
k청소년 법정대리인 몸의 및 이용 안내여부 등									
청소년이 회원가임을 하거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법정대리인 등의 절자 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가?	(4)	아니으							
* 이메일, 전화, 팩스, I-PIN 등	1.310	10.00							
-2. ▼청소년의 유로서비스 이용시, 법정대리인에게 이용내역을 메일이나 휴대폰 등으로 안내하고 있는가?	예	아니오							
항목4의 문항물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			1000						
짜즐자료4 (여시) 짜즐자료41(회원가업 또는 유료서비스 마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 절자 캡터 화면	만14세 이라 생년원	일일 가입 시 법정대리인 인증황	노출화면 제출						
제출자료4-2 변정대리인 이용내역 만내 절자 작용 컵제 화면 등	(SOUTH CONTRACTOR	THE PARTY NAMED IN COMPANY	No. of Contract of						
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실시 현황 	186	al I a							
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?	591	아니므							
-1. 5-1-1. 교육방식은 어떡한건?	대연교육	은라인 서면교육							
5-1-2 교육대상은 누구인가?	모니터링 고객센터								
·2. 청소년보호 고목에 청소년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, 청소년유해정보 유형, 모니터링 방침, 유해정보 발견 시 대저방법 등 주요내용이 포함		아니오							
-3. ▼청소년보호 교목실적을 기재하시오	메일을 통해 청소년	유해성 관련 정택 및 모니터림	방						
항목5의 문항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									
(예시) 제출자료5 대면교육의 경우	12.0								
	2.1								
제출자료의 정기/집합교육의 정우_교육사진, 교육자료 교육장석인원 등 하이 되어서 자해지는 소시크로의 경우 그모(하이 학교 등은 하이입기 하이셔지 그모다산 되									
회의 등에서 진행하는 수시교육의 경우,교육(회의)자료 혹은 회의일자, 회의사진, 교육대성 등	SA IS DEIDING	TI (ES) 249 2000 11+							
회의 통에서 진행하는 수시교육의 경우 교육(회의)자료 혹은 회의일자, 회의사진 교육대성 등 제출자료5,은라인·서면교육의 경우,교육자료 교육대성 교육자료 제공화면 접제 등	· 청소년유해대제를	모니터링 정책 공유데일 제출							
회의 등에서 진행하는 수시교육의 경우,교육(회의)자료 혹은 회의일자, 회의사진, 교육대성 등	장소년유해대제를 .	교니터링 정책 중유대일 제출 아니오	99						

※ 유해대응센터 / TEL: 1566-4882/ E-Mail: help@help.bugs.co.kr **URL: https://help.bugs.co.kr/inquiry/reg?target=bugs/inquiry/form%3Flang%3Dko&category=13026

- (제목·명칭 식별 및 검색제한에 관한 사항) 데이터베이스에 불법촬영물등 관련 검색어를 설정하여 검색제한하고, 매주 업데이트 하는 등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 지 않도록 유영
- (영상물의 식별 및 게재제한에 관한 사항) 영상물 등록 영역은 없으며, 스크린 샷 게재에 대해 매일 업무 외 시간 모니터링 요원이 수시 모니터링하여 불량 게시물 삭제 처리
- (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 고지에 관한 사항) 서비스이용약과 제 14조, 제18조를 통해 불법게시물 및 음란사이트 게재에 대한 위법내용 고지
- (그 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) 영상물 등록 영역은 없으며, 스크린샷 게 재에 대해 매일 업무 외 시간 모니터링 요원이 수시 모니터링하여 불량 게시물 삭제 처리

2) 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마련

- 신고기능 마련
 - 고객센터 메인메뉴를 통해 음원 추가 및 신고창구 운영





<영상물 등록은 뮤직비디오 외 업로드 영역 없음>

- 신고처리 전담부서 운영
 - 서비스운영팀, 1566-4882
- 3) 불법촬영물등 검색 제한 조치
 - 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 제한
 - 음원및가사, 아티스트만 검색가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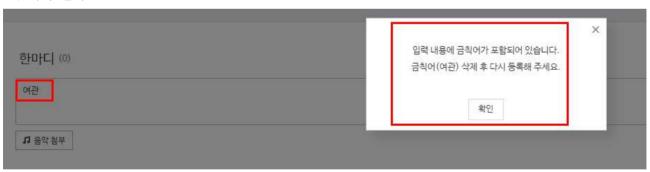
<음원 및 가사, 아티스트 외 검색불가>

○ 불법촬영물등 연관검색어 등 제한

<금지어 등록현황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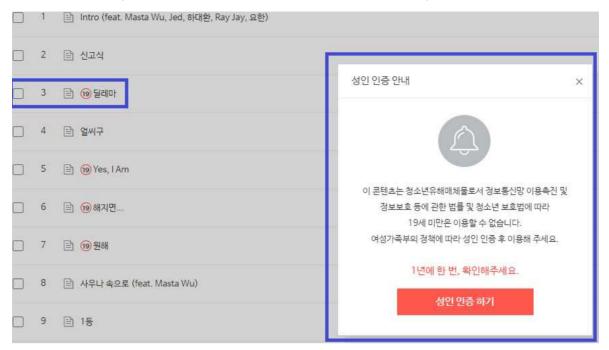


<금지어 필터>



- 4)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
 -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필터링 적용
 - 해당없음
- 5)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
 - 사전경고 조치 시행

- 해당없음(19금 음원 청취 시 성인인증 절차 적용)



- 로그기록 보관
 - 불건전사용기록 1년간 보관(개인정보처리방침내 게재)
- 6) 기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
-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인력 배치 및 24시간 모니터링
- 일반 이용자 곡/영상 업로드 시 실시간 메일알림
- 유해매체물인 경우 즉시 삭제 및 유관팀 전달
- 불법촬영물등 유통 이전 전담부서를 통한 검수진행
- 음원 유통 이전, 전담부서에서 영상 및 음원 이상여부 검수

3.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

○ 2021. 1. 1. ~ 12. 31. 까지의 신고·삭제요청 등의 횟수, 내용, 처리기준, 검토결 과 및 처리결과 등 현황 기재

< 신고삭제요청 및 처리결과 통계 >

	구	· L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계
신	신고·삭제	피해자 등	0	0	0	0	0	0	0	0	0	0	0	0	Ö
-		기관·단체	0	0	0	0	0	0	0	0	0	0	0	0	0
ᅶ	요청인	소계	0	0	0	0	0	0	0	0	0	0	0	0	0
접	사유	불법촬영물	0	0	0	0	0	0	0	0	0	0	0	0	0
		허위영상물 등	0	0	0	0	0	0	0	0	0	0	0	0	0
수		아동청소년성착취물	0	0	0	0	0	0	0	0	0	0	0	0	0
처		삭제·접속차단	0	0	0	0	0	0	0	0	0	0	0	0	0
리	7	해당 <u>없음</u>	0	0	0	0	0	0	0	0	0	0	0	0	0
디디	방심위 심	심의삭제·차단	0	0	0	0	0	0	0	0	0	0	0	0	0
결	의요청	해당없음	0	0	0	0	0	0	0	0	0	0	0	0	0
	ᅴ표요	각하 등	0	0	0	0	0	0	0	0	0	0	0	0	0
과		소계	0	0	0	0	0	0	0	0	0	0	0	0	0
	삭제·차단	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	0	0	0	0	0	0	0	0	0	0	0	0	0
		허위영상물 등	0	0	0	0	0	0	0	0	0	0	0	0	0
	사유	아동청소년정착취물	0	0	0	0	0	0	0	0	0	0	0	0	0

4.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

- \bigcirc 음원 및 영상 유통 전 유관팀 검수
- 음원 및 영상 유통 후 모니터링 요원 24시간 근무
- 모니터링 기준은 여성가족부 [청소년유해매체물 가이드라인]을 참고.
- 불법촬영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발견 시 즉시 삭제 및 등록자 제재 4

<이용약관을 통해 고지>

- 1.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- (1)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, 다른 회원의 아이디 (ID) 및 비밀번호를 도용,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
- (2)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건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

(3)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<mark>불</mark>이익을 주는 행위

(4)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(링크)하는 행위 (5) 회사의 저작권,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
- (6)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를 통하여 제공받은 음원 또는 영상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과 매장 등에서 제3자에게 재생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형위
- (7)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, 문장, 도형,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
- (8)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 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
- (9)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
- (10)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하위로 명시하는 행위
- (11)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, 저장, 공개하는 행위
- (12)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해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

(13)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

(14)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

- (15)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,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
- (16)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
- (17)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(컴퓨터 프로그램 포함)의 전송 또는 게시 행위
- (18) 회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
- (19) 컴퓨터 소프트웨어, 하드웨어, 전기통신 광비의 경상적인 가동을 방해. 파괴함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,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, 파일,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e-mail(전자우편)으로 발송하는 행위
- (20) 스토킹(stalking)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
- (21)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
- 2. 회원은 관계 법령, 본 약관의 규정, 이용안내 및 서비스성에 공자한 주의사항, 회사가 통지하는 사랑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<u>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</u>다. 3. 회원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, 광고를 통한 수일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, 상용소프트웨어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.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영업 활동의 결과 및 손실,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며, 회원은 이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
- 4.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(이하 "등록정보")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- 5. 회원은 등록점보에 반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정신하여야 합니다. 회원이 제공한 등록검보 및 정신한 등록검보가 부정확할 경우, 기타 회원이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형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본 약관 제23조에 의해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 할 수 있습니다.
-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내부관리계획을 청소년보호 내부관리와 동일하게 관리 $\overline{(5)}$ 유영

22년도 청소년보호책임자 운영실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

점검내용	점검결과	개선제회('아니오' 해당 시)
1. 청소년보호적임자 지정여부 등	*	Re
청소년보호적임자를 지정하였는가? 1.1 ■ (정보통신당법 제76조) 용법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적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됨	여 아니모	
1-1-1. 당해면도 4월말까지 지정하였는가? ※(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7조)	여 아니오	
정소년보호적임자 및 답당자의 정보 를 웹사이트에 공개하였는가? 1-2 * 성명, 소속부서, 전화번호 미메일 주소 등	예 아니오	
1-2-1. 웹사이트에 공개된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정보가 현행화 되어있는가?	아니오	
1-3. 청소년보호적임자가 임원이 마닌 부서의 장일 경우,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업무를 설명하시오. ※(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제2함)	일원으로 지정되어 있음.	
제출자료1 행목1의 문항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(여시) 제출자료12_원사이로 공개화단 전제	청소년보호정책 캡처 제출	
2. 정소년보호제획 수립여부		
· · · 사업자 성격에 맞는 연도별 자체 청소년보호계획을 수립하였는가?	아니오	
*** 2-1-1. 청소년보호의 목표 및 기본원칙, 기술적 관리적 장치,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방법 및 대용절차 등 주요내용이 포함되었는가?	아니오	
2-2. 연도별 자제 청소년보호계획에 대한 청소년보호책임자의 결재를 받았는가?	예 아니오	방통위 및 여가부 등 관련자관 중문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관될과 지속한 의(결제절자는 아니지만 개선 시 업무공유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)
2-3. 연도별 자제 청소년보호계획 혹은 청소년 보호정책을 휩사이로 및 모바일 앱에 공지하였는가?	아니오	
정보인의 목권들을 공연할 수 있는 가로 계속 (여시) 제공자료고 (전도일 자격 정소년보호계획 제공 제공자료2 제공자료2 등 대공자 (전도일 자기 정소년보호계획 관련 결제론서	형소년업무가이드 여가부 가이드라인 제출 별도 열제진령하지 않음	**
제출자료2-3_연도별 자제 청소년보호계획 혹은 청소년보호정적 고지화면 컵처	청소년보호정책 노출화면 제출	
3.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 조치 실적	2	- N
3-1.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 별도의 표시를 하고 있는가?	아니오	
3-2.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정보에 접근 시 성인인증물 요구하고 있는가?	이 아니오	
3-3. 청소년유해정보가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많도록 검색 시 금칙어(혹은 청소년유해어)를 설정하고 있는가?	아니오	
3-4. 청소년유해정보(미미지, 동영상) 등에 대해 기술적 조치(필터링)를 실시하고 있는가?	아니오	접근자체 불가
3-5. 그 외 별도의 성인 커뮤니티 개설관리, 성인정보 공개범위 스크랩 제한 기능 설정 등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실적이 있다면 기재하		
3-6. 청소년유해정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인원을 기재하시오	2명이 업무 외 시간에 교대근무로 유해 컨텐츠 등록	•••
3-6-1. 청소년유해정보 모니터링 실적을 기재하시오.		
함목3의 문항물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		
(에서) 제출자르와1_청소년유해매제물 표시 접처 화면	19급곡/영상 연령표기화면 제출	
제출자료3-2,성인민증 법제 화면	성인인증항 제출	
제출자료3 제출자료3-3 정소년 접근패한어 리스트(일부만 제출)	급칙어 리스트 캡쳐 제출	
재출자료3:4_이미지, 동영상 등 필터링 적용 캡처 화면	유직비디오 19금 표기화면 제출	
제출자료3-5_기타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조지 실적 접저화면 통	19금 곡 재생 시 성인인충창 노출되는 화면 제출	
제출자료과 등 모니터링 인력현황 및 실적(개인정보 제외)	청소년유해정보 모니터링 메일화면 제출	
4. 정소년 법정대리인 용의 및 이용 안내여부 등		
청소년이 회원가입을 하거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절자 를 거지도록 하고 있는가?	예 아니오	1
" 이메일 전화, 팩스 L-PIN 등	7772	
4-2. 청소년의 유료서비스 이용시. 법정대리인에게 이용내역을 메일이나 휴대폰 등으로 안내하고 있는가?	어	
항목4의 문항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짜출자료4 (예시) 짜출자료4·1.회원가입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 시 벤정대리인 용의 절차 캡쳐 화면	만14세 이라 생년월일 가입 시 법정대리인 인증황	노출화면 제출
제출자료4-2 법정대리인 이용내역 만내 절자 적용 캡처 화면 통	18.	
5. 정소년보호를 위한 교육실시 현황		
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?	예 아니모	
5-1. 5-1-1. 교육방식은 어떠한가?	대연교육 온라인 서면교육	
5-1-2 교육대상은 누구인자?	모니터링, 고객센터 상담원	
	어 아니오	
5-3. 청소년보호 교육실적을 기재하시오.	메일을 통해 청소년유해성 관련 정책 및 모니터링	방
항목5의 문항품을 준비할 수 있는 자료 제출		9 9
(여시) 제출자료5 대단교육의 경우.		
제출자료5 형기(집합)교육의 경우 교육사진 교육자로 교육참석인원 등	E 1	
회의 등에서 진행하는 수시교육의 경우 교육(회의)자를 혹은 회의일자, 회의사진 교육대상 등		
제출자료5 유라인 서면교육의 경우 교육자로 교육대상 교육자로 제공화면 접처 등	청소년유해대체를 모니터링 정책 공유데일 제출	
6. 피해상당 및 고충저리 실적	0-01111111 - 110 01 51115 18	
6. 비에경당 및 고장시다 본역 6-1. 『이용자가 불법 유해정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기는 마련 혹은 신고센터를 설치하였는까?	예 아니오	30

<청소년보호 내부관리 자율점검>

5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

구 분	정	부
성 명	서상훈	최주현
부 서	서비스사업운영실	서비스운영팀
직 책	실장	팀장
지 정 일	2022. 01. 01.	2022. 01. 01.

6.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

○ 2021. 1. 1. ~ 12. 31. 까지의 내부직원 대상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교육 실시 실적, 불법촬영물등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이수 등 기재

구 분	교육일	교 육 명	참 석 자	시 간	교육기관
교육참여	2021-11-1	불법게시물 모니터링	박철영외 4명	1	서면교육
		정책 가이드	기 르 O 시 4 O		